

중요한 법적 통지서

PG&E 고객 여러분께,

귀하가 본 우편물을 받으시게 된 이유는, PG&E Corporation 과 Pacific Gas and Electric Company(합하여 "PG&E"라 함)가 제 11 장 사건의 다음 단계인 "제출기한의 결정"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제출기한은, **제 11 장 사건의 접수일인 2019년 1월 29일 전의 기간에 대해 여하한 사람이나 단체가 자신이 PG&E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청구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마감일입니다.** 미 연방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 파산법원은 그 제출기한을 **2019년 10월 21일 오후 5시 (태평양 표준시 기준)로 정했습니다.**

이 마감일이 중요한 이유는, 제 11 장 절차의 일환으로, PG&E 는 자신이 여러 채권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금액 전부를 확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출기한과 청구 증명서를 제출하는 절차는 접수일인 2019년 1월 29일 전에 발생한, PG&E 를 상대로 하는 모든 청구에 적용됩니다.

제출기한에 관하여 귀하가 알아야 할 것

1. 모든 PG&E 고객들이 본 통지문을 수령하고 있는 중입니다. 귀하가 본 통지문을 받았다는 것은 귀하에게 청구권이 있거나 또는 PG&E 나 파산법원이 귀하에게 청구권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2. 통상적이고도 관습적인 환급금, 과지급금, 결제 청구 크레딧, 예치금 또는 이와 비슷한 결제 청구 항목에 대해서는, 고객들이 청구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항목들에 관한 문의는 PG&E 의 고객 서비스 센터로 보내져야 합니다.
3. **귀하가 PG&E 를 상대로 하는 청구권이 귀하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 본 통지문에 응하여 아무 것도 하실 필요가 없거나 청구 증명서를 반송할 필요도 없습니다.**
4. 귀하가 2019년 1월 29일 전에 발생한 청구권이 귀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또는 그 외에 지급되지 않았던 돈을 그 제출일 전부터 PG&E 에게서 받아야 한다고(위 제 2 항에 언급된 금액은 제외) 생각하는 경우, 제출기한인 **2019년 10월 21일까지** 청구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귀하의 청구는 배제될 수도 있고 귀하는 아무런 배분금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5. 귀하가 북부 캘리포니아 산불로 인해서 발생한 청구권 또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와 관련된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¹ 귀하는 해당 산불에 대한 청구 증명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서식은 WWW.PGECUSTOMERBARDATEINFO.COM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6. 귀하가 본 통지서를 받기 전에 이미 PG&E 의 청구 처리 대리인인 Prime Clerk 에게 청구서를 제출했다면, 또 다른 청구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청구 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

청구 증명서 서식이 동봉되어 있는데, 이는 북부 캘리포니아 산불과 관련된 청구 이외의 다른 청구를 위해 사용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북부 캘리포니아 산불로 인해서 발생한 청구권이나 또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 산불과 관련된 청구권이 귀하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귀하는 제출기한까지 해당 산불의 청구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모든 청구 증명서(산불 관련 청구 증명서 포함)는 **2019년 10월 21일 오후 5시(태평양 표준시 기준) 이전까지 접수되도록** 아래와 같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¹ 북부 캘리포니아 산불(Northern California Fires)에는, 다음과 같은 화재들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즉, 37, Adobe, Atlas, Blue, Butte, Camp, Cascade, Cherokee, Ghost Ship, Honey, La Porte, Lobo, Maacama, McCourtney, Norrbom, Nuns, Partrick, Pocket, Point, Pressley, Pythian (Oakmont 로도 알려짐), Redwood, Sullivan, Sulphur, 및 Tubbs.

<p>1 중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p> <p>PG&E Corporation Claims Processing Center c/o Prime Clerk LLC Grand Central Station PO Box 4850 New York, NY 10163-4850</p> <p>당일 특송업체를 통해 송부하는 경우:</p> <p>PG&E Corporation Claims Processing Center c/o Prime Clerk LLC 850 Third Avenue, Suite 412 Brooklyn, NY 11232</p>	<p>직접 전달하는 경우:</p> <p>PG&E Corporation Claims Processing Center c/o Prime Clerk LLC 850 Third Avenue, Suite 412 Brooklyn, NY 11232</p> <p style="text-align: center;">-또는-</p> <p>다음과 같은 PG&E 사업장들 중 한 곳(2019년 7월 15일부터 제출기한(2019년 10월 21일)까지 태평양 표준시 기준으로 오전 8시 30분~오후 5시): (i) 350 Salem Street, Chico, CA 95928; (ii) 231 "D" Street, Marysville, CA 95901; (iii) 1567 Huntoon Street, Oroville, CA 95965; (iv) 3600 Meadow View Road, Redding, CA 96002; (v) 111 Stony Circle, Santa Rosa, CA 95401; 또는 (vi) 1850 Soscol Ave. Ste 105, Napa, CA 94559. 청구 서비스 센터에서 복사기를 사용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귀하가 날짜가 찍힌 사본을 받고자 하신다면 귀하의 청구서의 사본을 가져와야 합니다.</p>	<p>전자적 방식으로 송부하는 경우:</p> <p>Prime Clerk 이 개설한 사건 웹사이트인 www.pgecustomerbardateinfo.com에 접속해서서 "Submit a Claim(청구서 제출)" 링크를 클릭한 다음 그에 기재된 안내사항을 따르십시오.</p>
---	---	---

청구 증명서를 적시에 제출하고 제출기한 명령서에 기재된 청구 증명서를 성실히 작성하는 청구자는, 자신의 청구가 법원의 명령에 의해 인정되거나 각하될 때까지, 해당 법에 의해 허용되는 정도까지, 해당되는 자신의 청구 증명서를 수정, 변경 및/또는 보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청구 증명서는 제출기한 이전까지 위에 열거된 주소들에서 실제로 또는 전자식으로 접수된 경우에만 제출된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귀하가 전자식 제출 시스템을 통해서 청구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귀하는 전자식 제출 시스템이 생성하는 이메일 확인서를 귀하가 제출한 청구 증명서의 이미지와 함께 받을 것입니다. 청구 증명서는 팩스나 텔렉스 또는 전자우편 전송을 통해서 전달될 수 없습니다(Prime Clerk 웹사이트에 있는 전자식 제출 시스템을 통해서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청구 증명서는 제외).

장래의 통지

추가 업데이트 사항을 받아보고 싶으면, 중요 사건 문서에 대한 전자식 통지를 받을 귀하의 전자우편 주소를 Prime Clerk 이 유지하는 웹사이트인 www.pgecustomerbardateinfo.com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본 통지문에 관하여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귀하는 Prime Clerk 에게, 미국에 본거지를 둔 당사자들의 경우에는 (844) 627-7787 번으로 (요금 무료), 또는 해외에 있는 당사자들의 경우에는 +1 (347) 292-2703 번으로, 또는 pgecustomerbardateinfo@primeclerk.com으로 이메일을 통해 연락할 수 있습니다. **Prime Clerk 은 법률자문을 제공할 수도 없고, 귀하가 청구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귀하에게 자문해 줄 수도 없다는 것을 유의하십시오.**

제 11 장 사건에 관하여

2019년 1월 29일, PG&E Corporation 과 Pacific Gas and Electric Company 는 각각 파산법 제 11 장에 따른 파산 신청서를 미 연방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파산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당해 제 11 장 사건들은 PG&E Corporation 및 Pacific Gas and Electric Company 관련 관례, 사건번호 제 19-30088 호(DM) 에 의거하여 공동 관리되고 있습니다. PG&E 의 제 11 장 사건에 대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찾으려면, <http://www.pge.com/reorganization> 을 방문하십시오.

제출기한 명령서 및 청구 증명서를 포함하여, 제 11 장 사건에서 제출된 모든 문서들의 사본은 채무자들의 통지서/청구 처리 대리인인 Prime Clerk 에게서 <https://restructuring.primeclerk.com/pge> 에서 보고/보거나 입수할 수 있습니다.